

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
2018.8.21

케이티 노동조합

위원장 김 해 관



[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]

| 현행 | 개정 | 비고 |
|--|---|--|
| <p>제56조(징계의결요구) ① 징계요구권자는 각 부서의 장과 윤리경영 부서의장으로 <u>한다</u>.</p> <p>② <생략></p> <p>③ 윤리경영 부서의 장은 <u>회사 직원에게 징계 혐의가</u>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요구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④ <생략></p> | <p>제56조(징계의결요구) ① 징계요구권자는 각 부서의 장과 윤리경영 부서의 장으로 <u>하고,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의 경우 기관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 및 중앙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(이하 “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장을 포함한다</u>.</p> <p>② <생략></p> <p>③ 윤리경영 부서의 장 또는 <u>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의 장은 회사 직원에게 징계 혐의(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의 장의 징계의결 요구는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의 경우에 한함)가</u>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요구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④ <생략></p> | <p>[개정내용]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‘성희롱 고충전문심의위원회의 장’을 추가함</p> |
| <p>제65조(징계의 집행) ① <생략></p> <p>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"별지 제9호"서식의 징계처분</p> | <p>제65조(징계의 집행) ① <생략></p> <p>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“별지 제9호”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</p> | <p>[개정내용]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성희롱</p> |

| 현행 | 개정 | 비고 |
|--|---|--|
| <p>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u>(추가)</u></p> <p>③ <생략></p> | <p>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u>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의 경우, 피해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하며 성희롱과 무관한 징계사유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생략></p> | <p>피해자에게도 통지하게 함</p> |
| <p>제68조(재심청구) ① 징계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징계요구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,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<생략></p> | <p>제68조(재심청구) ① 징계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<u>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의 경우 피해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징계요구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, 징계처분을 받은 자, <u>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는</u>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<생략></p> | <p>[개정내용] 재심청구권자에 성희롱 피해자를 추가함</p> |

| 현 행 | 개 정 | 비 고 |
|--|---|---|
| 제70조(재심청구절차) ① ~ ② <생략> <u>③ (추가)</u> | 제70조(재심청구절차) ① ~ ② <생략> <u>③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1. <u>재심청구서(별지 제12호 서식)</u> 2. <u>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자료</u> | [개정내용] 성희롱 피해자의 재심청구절차를 신설함 |
| 제72조(재심청구의 취하) 징계요구권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. 다만, <u>징계요구권자가</u>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 제72조(재심청구의 취하) 징계요구권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, <u>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</u> 는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. 다만, <u>징계요구권자,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가</u>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 [개정내용]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자에 <u>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</u> 를 추가함 |
| 제74조(처분의 효력)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. 다만, <u>징계요구권자가</u> 재심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~ ③ <생략> | 제74조(처분의 효력)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. 다만, <u>징계요구권자 또는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가</u> 재심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~ ③ <생략> | [개정내용] 성희롱 관련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, 재심의에서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 |

| 현행 | 개정 | 비고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분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규정함. |
| | <u>(별지 제12호 서식) 징계재심 청구서(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용)</u> | <u>성희롱 피해자용 징계재심청구서</u> 를 마련함. |

※ 부칙 (2018. XX. XX) (발령일로 반영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징계재심 청구서(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용)

| 징계 재심 청구자 | 성명 사건당시 소속 | 직책/직위 | 소속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| | 생년월일 | 재직기간 |
| 재심의 취지 | | | |
| 재심의 이유 및 입증방법 | | | |

위와 같이 징계재심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[청구인 또는 청구기관] (인)

※재심의 취지, 재심의 이유 및 입증방법은 별지 작성할 수 있음

대 리 인 지 정 서

소 속
직책/직위
성 명

위 자를 ○○○○의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자 ○ ○ ○ (인)

○○ 인사위원회 귀하